

	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9
		제정일자	1998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6차
		소관부서	교육혁신전략실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·개편 및 편성에 관한 사항
3.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교육혁신전략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입학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, 각 학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8조(서기)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9조(회의결과 보고) 위원장은 회의 종료 즉시 총장에게 의결사항을 보고하고,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2조(기능), 제3조(구성)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1일부로 적용한다.